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3가단3313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유정

변론 종결 2024. 9. 25.

판결 선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공유자 지분 41.6분의 21.8 중 2/11지분에 관하여 2023. 8. 8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공유자 지분 41.6분의 21.8 중 2/11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. 8. 30. 접수 제1059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C은 주식회사 D, 주식회사 E, 주식회사 F(이하 '주식회사 D 등'이라 한다)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한다. 원고는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여 C을 상대로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이다.

C은 2023. 8. 8.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고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소를 구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구한다(상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).

2. 판단

피고는,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주식회사 D 등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신용카드 대금 채권 등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상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, C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기는 2002.경으로서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주식회사 D 등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(갑 제1호증,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주식회사 D 등의 채권을 양수한 G 주식회사가 C을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권고결정 신청을 하여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8. 10. 24. 확정되었고,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. 9. 11.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,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, 이행권고결정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상 위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위 판단에 영향이 없다).

결국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강지현

별지